

## 3. 2014년도 달라지는 주요 예산제도

### □ 지방예산편성 기준경비 운영 강화 및 개선

#### ○ 일·숙직비 한도 설정

- '04년부터 지방 자율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 중
  - \* 지방공무원 복무조례, 지방자치단체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등
- 이후 자치단체 간 지급 기준액이 최대 3배 차이가 발생
  - \* 최저단체 : 3만원, 최고단체 9만원 / 국가 : 3만원
- 1일(야)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

#### ○ 교육강사수당 한도 설정

-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
- 다만,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%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

#### ○ 월액여비 한도 설정

-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로,
- 자치단체별 사무의 종류, 사무량 등이 유사함에도 격차가 심화
- 국가의 최고 상한액인 월 138,000원을 한도로 하되, 50%까지 가산 허용, 50% 가산은 출장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책정토록 함

#### ○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기준액 조정

- 의장·부의장과 의원간 국외여비 기준액 구분은 예산편성을 위한 한도액임에도 일부에서는 집행의 기준으로 잘못 인식
- 의장·부의장·일반의원 구분 없이 1인당 2,000천원 통일
- ※ 다만, 해당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시 차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(의장·부의장 2,500천원, 의원 1,800천원)

## ○ 세종특별자치시 및 대구광역시 업무추진비 조정

- 세종특별자치시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인상
- 대구광역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 등급 조정

## □ 건전한 예산편성 기반 마련

### ○ 의정의 등 친목성격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 금지 명문화

- 전·현직의원 단체인 '**의정의**' 및 퇴직공무원 단체인 '**행정동우회**' 등에 대한 **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**하도록 명문화

### ○ 직원능력개발비 폐지

- '05년부터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서는 제외하고, 국가 기준을 준용토록 변경하였으나
- 국가는 '05년도 맞춤형(선택적) 복지제도 신설로 직원능력개발비 지급근거 삭제 ('05국가예산편성지침, '05세출예산집행지침)
-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의 일부항목과 중복(자기개발항목)되므로 직원능력개발비의 예산편성 근거를 삭제

### ○ 행사·축제사업의 원가관리를 위한 세부사업 구조화 개선

- 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·축제의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선심성 행사·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외부통제 강화 필요
- 현행 자치단체의 세부사업에는 행사·축제 예산과 일반사업 예산이 혼재되어 있어, 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에서 원가회계정보 산출 곤란
- 자치단체별 행사·축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, 각각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원가회계정보가 정확히 산출되도록 개선

### ○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산정방식 개선

- 최근3년간 자체수입의 기준에 대하여 '당초예산'을 실제수납액인 '결산액' 기준으로 변경

- 회계별 구분을 전년도 민간이전경비 기준액은 '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'로 하고,
- 최근 3년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기준은 제도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'일반회계'로 명확히 구분

## ○ 지방자치단체 성과예산제도 시행

- **(추진배경)** '08년부터 본격 도입·시행하고 있는 사업예산제도가 정착되었으므로 한 단계 발전하여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로 전환 필요
  - ※ 국가의 경우 '09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 의무화(국가재정법 제8조제2항)
- **(기념)** 지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의 극대화 등을 위해 자치단체별 성과계획과 사업예산을 통합한 예산서
- **(문제점)** 성과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「지방재정법」 미개정, 조직 성과관리 체계(BSC 등)와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연계 미흡, 전담 인력부족 등 기초자치단체의 성과예산편성 역량 부족

⇒ 「지방재정법」 개정, 기초자치단체 시범작성 등을 통해 문제점 및 제도 보완 후 '15회계연도부터 시행 ('14.7월)

## □ 세입 예산과목 편제 전면 개편

### ○ 세입예산 과목 편제 전면 개편

- **'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(700)'의 별도과목을 신설**
  - 보전수입(701) : 세외수입 중 잉여금, 전년도이월금, 융자금원금회수
  - 내부거래(720) : 전입금, 예수 및 예탁금
- '지방채 및 예치금회수(600)' 과목은 순수 지방채와 예치금회수를 분리
  - 지역개발기금 시·도 융자금수입 : 지방채(국내차입금610) → 내부거래(720)
  - 예치금 회수 : 예치금회수(630) → 보전수입 등(710)

## ○ **새출예산 과목 설정 개선**

### - **‘맞춤형복지 시행경비’ 과목 별도 신설**

⇒ 사무관리비(201-01) 내 ‘맞춤형복지 시행경비’를 별도 통계목(201-04) 신설

### - **의회비 내 통계목 명칭 변경**

⇒ ‘국내여비(205-03)’를 ‘의원국내여비(205-03)’로, ‘국외여비(205-04)’를 ‘의원국외여비(205-04)’로, ‘기관운영업무추진비(205-06)’를 ‘의회운영업무추진비(205-06)’로 명칭 변경

### - **입영장정지원비(301-06) 통계목 삭제**

⇒ ‘입영장정지원비(301-06)’ 통계목 삭제하고, 일반보상금(301) 편성목 내 통계목 코드 조정

### - **선출직공무원의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예산편성 과목 구분 설정**

⇒ 연금부담금(304-01) 통계목에 ‘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연금 기관부담금’ 분류 기준 마련

### - **공사·공단 융자금 통계목 신설[공사·공단 융자금(501-03)]**

### - **시·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통계목의 목그룹 조정 및 명칭 변경**

⇒ ‘시·도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 상환(601-01) 및 이자 상환(311-01)’을 ‘예수금 원리금 상환(705-03~04)’목으로 재분류 및 통계목 명칭 변경

### - **기타 변경된 법령·부처명 등 일부 수정 사항 반영**